

#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

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한 「2025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7일  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 < 목 차 >

1. 사업개요
2. 용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
3. 사업비 산정기준
4. 기타 유의사항
5. 근거법령 및 규정(안)
6.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7. 문의처

## 1. 사업목적

-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(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첨단바이오, 로봇, 방산)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&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

## 2.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

-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&D 자금 용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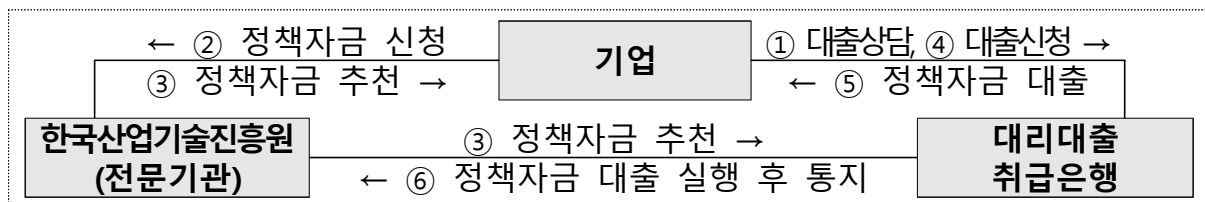
## 3. 지원 규모 및 기간

- (지원 규모) 2025년 1,200억원  
 (지원 기간) 5년(2년 거치,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## 4. 지원방식

- 용자(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용자하는 대리대출)  
 (대리대출 취급은행, 13개)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KDB산업은행, 제주은행, BNK경남은행, BNK부산은행, iM뱅크(DGB대구은행)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

## 【 대리대출 지원 방식 】



## 5. 신청자격

-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\*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(개인사업자 제외)

\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로봇, 방산

## 6. 용자한도 및 금리

- (용자한도) 기업당 최대 50억원(최소 1억원 이상, 1천만원 단위)  
 \* 대출금은 일시 실행만 가능(확정대출금은 분할 인출 불가하며,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인출)  
 (용자기한) 최대 5년으로,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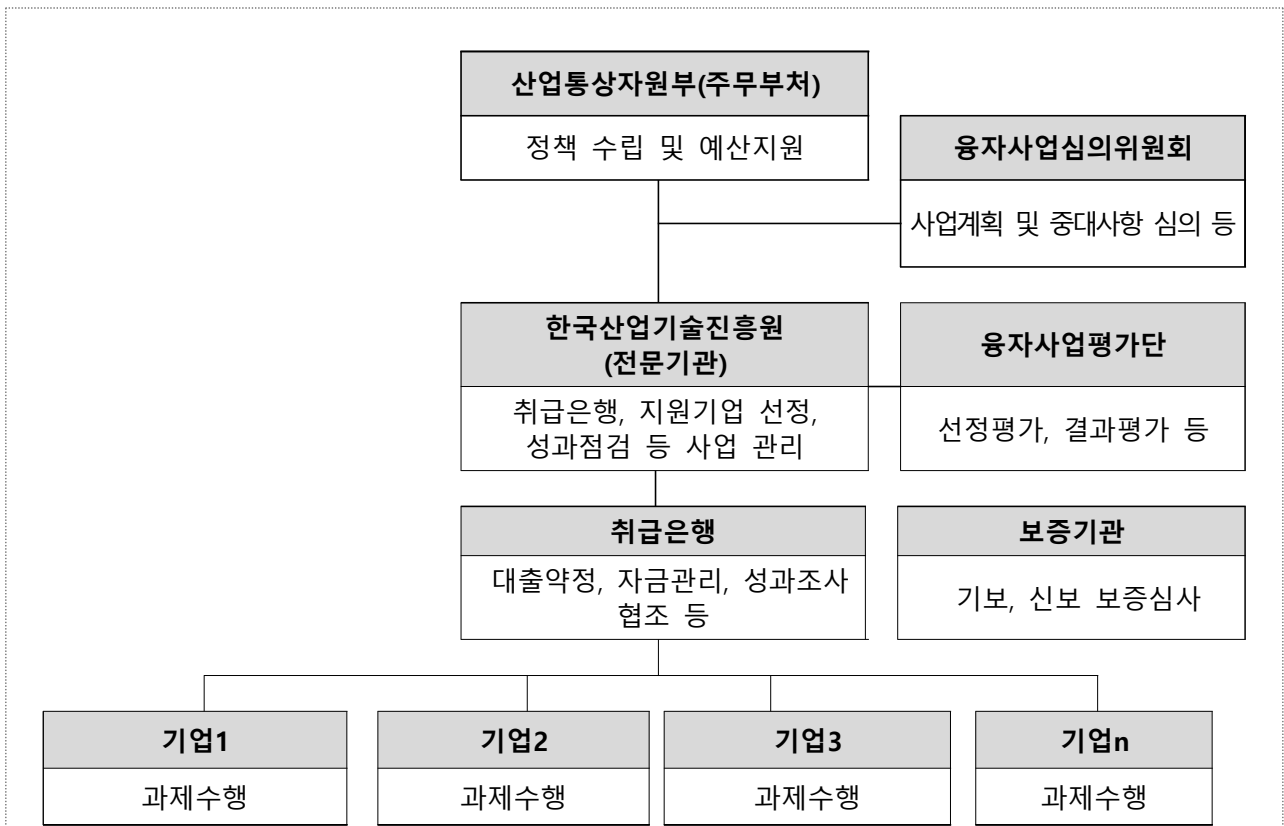
- (융자금리)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「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(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)」 보다 2.0%p 차감 적용(분기별 변동 금리)하며, 최저금리는 1.3% 적용

\* (예시 : '25.1분기 기준) 2.87%(분기별 변동) - 2.0% = 0.87% → 최저금리 1.3% 적용

- (보증연계)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가능하며,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

## 7. 사업 추진체계

- (주무부처) 사업 시행계획 수립,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
- (전문기관) 취급은행 · 지원기업 선정, 과제관리,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
- (취급은행)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 · 상환 등 자금관리, 성과조사 협조 등
- (보증기관)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(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)
- (수행기업) 사업계획서 작성, 과제 수행, 원리금 상환 등



## II

# 용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

### 1. 지원 절차

추진내용	추진주체	추진일정
사업 공고	산업통상자원부	'25. 2월
↓		
(필수) 사전 상담	신청자 ↔ 취급은행, 보증기관	'25. 2월 ~ 3월 중
↓		
신청·접수	신청자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5. 2월 ~ 3월 중
↓		
적격성 평가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→ 신청자	'25. 3월 말
↓		
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→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	'25. 3월 말
↓		
(필요시) 보증 신청·심사·승인	사업자 → 보증기관	'25. 2 ~ 3월
↓		
대출 신청·심사·승인	사업자 → 취급은행	'25. 4월 ~
↓		
자금 대출	취급은행 → 사업자	'25. 4월 ~
↓		
과제 수행	사업자	-
↓		
중간 진도점검	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취급은행 → 사업자	-
↓		
용자금 상환	사업자 → 취급은행	-
↓		
결과 평가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→ 사업자	-
↓		
성과 조사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→ 사업자	-

\*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2. 평가 기준

### 가. 사전검토

-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
  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기개발/기지원 여부,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(라.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)
-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### 나. 적격성 평가

-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
    - 과제 필요성, 목표, 내용, 수행방법, 예상성과,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·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\* 결정
- \*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,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

### 평가 항목

평가 항목		배점	평가 내용
개발 기술제품의 내용	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</li> <li>■ 개발 기술·제품의 중요성, 필요성, 실현 가능성</li> <li>■ 최종목표의 적정성, 개발 기술·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·산업적 파급효과</li> </ul>
	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</li> </ul>
사업화 유망성	사업화 전략의 타당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</li> <li>■ 주요 고객 분석, 수익 창출 방안,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</li> </ul>
	사업화 가능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,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,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</li> </ul>
기업 연구 역량	연구개발 역량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 내·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</li> <li>■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, 전문성 등</li> </ul>
<b>합계</b>		<b>100</b>	-

-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
-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\*을 신청해야 함
  - \*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보증기관에 별도 보증 신청
-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

-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,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,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
-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
-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,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(1회에 한정)

#### 다. 결과 평가

-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(거치기간)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,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
-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, 관리규정에 의거 용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
-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,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·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

#### 라. 지원제외 처리기준

- 아래의 경우에는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“한계기업”에 해당하는 경우
  - \* “한계기업”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(21~23년)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. 이때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‘BBB’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.
-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
-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
-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용자금 또는 사업비 (단,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용자신청과 지원이 가능)
- 기타 용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용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### III

## 사업비 산정기준

### 1. 사업비 산정기준

- 사업비 산정은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」에 따라 산정해야 함
  - 관리규정 [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]에 따름

#### 【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】

- (용도)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, 공정, 제품(소부장 포함)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

구분	내용
인건비	○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연구시설 장비비	○ 연구시설·장비 구입·설치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비,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○ 연구시설·장비 임차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임차비 ○ 연구시설·장비 운영·유지비: 유지·보수비,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
연구 재료비	○ 연구재료 구입비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○ 연구개발과제 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○ 연구재료 제작비: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비용
위탁연구 개발비	○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※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
연구 활동비	○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: 기술·특허·표준 정보 조사·분석, 원천·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○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: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※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 ○ 회의비: 회의장 임차료, 숙기료,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

구분	내용
	<p>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·세미나 개최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장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</li> <li>○ 소프트웨어 활용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·네트워크의 이용료</li> <li>○ 연구실 운영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</li> <li>○ 연구인력 지원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·훈련 비용, 학회·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(특근) 식대</li> <li>○ 그 밖의 비용: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·복사·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,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,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</li> </ul>
기타	○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\*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·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(백만 원 미만 절사),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## IV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
-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, 취급은행도 매월 20일에 KIAT로 용자금을 상환해야 함
  - 20일이 공휴일,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
-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책임자, 참여연구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기타 지원취소,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[V. 근거법령 및 규정]의 규정 적용



## V

## 근거법령 및 규정

### 1. 근거법령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### 2. 관련규정

-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사업 운영 규정」
  - \* 향후 운영 규정이 개정될 경우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VI

##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
### 1. 신청절차

- (온라인 신청접수)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(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)를 작성하여 K-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
  - 신청서식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[www.kiat.or.kr](http://www.kiat.or.kr)) → 본 사업공고
  - [www.k-pass.kr](http://www.k-pass.kr) 내 '과제관리 신청'을 통해 온라인 신청(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)만 가능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# 2. 신청기한

- 신청기한 : 2025. 3. 17. (월) 16:00까지(온라인 접수만 가능)

### 3. 신청 시 유의사항

-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'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'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
-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

□ 제출 서류

순번	필수여부	서류명	파일형식	비고
1	필수	사업계획서	hwp	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
2	필수	사전상담확인서	pdf	
3	필수	사업 약약서	pdf	
4	필수	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·보안서약서	pdf	
5	필수	사업자등록증	pdf	
6	필수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pdf	
7	필수	중소(벤처)기업, 중견기업 확인서	pdf	
8	필수	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(최근3개년) * 2021년~2023년으로 제출	pdf	*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(’21~’23년) 원본 또는 사본(원본 대조필) *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*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
9	특화단지 해당시	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(예정)기업 증빙	pdf	자유양식 (계약서, 입주확정 이메일 등) * 입주여부 확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확인 요망 * 입주기업, 입주예정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 필수 제출, 자유양식

\*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

\* (1번 서류)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(pdf 불가)

\* (9번 서류) 해당 시에만 제출

\*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(각종 증빙서류의 글자,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)

\*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 가능

\*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: <http://sminfo.mss.go.kr>, <http://www.hpe.or.kr>

\* 국세 완납증명서 : 홈텍스, 지방세 완납증명서 : 정부24

\* 결산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증명원) : 홈텍스

## VII 문의처

### □ 문의처

구분(담당부서)		연락처	문의 내용
시행부처	산업통상자원부 (산업기술시장혁신과)	044-203-4541	정책 문의
전문기관	한국산업기술진흥원 (사업화금융실)	02-6009-3624,3628	사업 관련 문의
	유지보수팀	02-6009-3000 <small>*1번 누르면 K-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</small>	온라인 접수 문의
보증기관	기술보증기금 (기술평가부)	051-606-7643	보증 관련 문의
	신용보증기금 (4.0창업부)	053-430-4375	

\*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은 참고에서 확인 가능

### □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사업 컨택센터

○ 번호 : 1551 - 8387

- (상담시간) 10:00 ~ 17:00

\* 점심시간(11:30 ~ 13:00) 및 토요일,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

국가첨단전략산업  
기술혁신 용자사업 컨택센터

☎ 전국대표번호 : 1551 - 8387

사업 관련 문의는 컨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 
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
  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**참고1**

**사전상담 확인서(필수 제출서류)**

**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 
사전상담 확인서**

■ 신청기업 개요 (신청기업 작성)

기업명		설립일	
법인등록번호		대표자(연락처)	홍길동 (010-000-0000)
사업자등록번호		담당자(연락처)	김길동 (010-000-0000)
업종		주요 제품	
주소	(TEL)		
융자신청 예정금액		총 000천만원	

■ 대출사전상담 내역 (은행 작성)

대출심사 담보확보 가능 예상 금액	합계 총 000천만원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구분	물건	소유자(관계)	예상금액
신용	X		000천만원
부동산 담보			000천만원
동산담보			000천만원
기타담보			000천만원
보증서	(보증기관과 협의 후, 기관명 기재) ※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 ※ 기본 보증서 활용시 기본 사전상담확인서도 필수 제출 필요(신청서 22 참고)		000천만원

※ 본 확인서는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,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별도 절차를 통해 최종지원여부가 결정되며, 향후 실제 평가와 대출·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·보증여부 및 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은행 직인 날인 필수(은행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, 서류접수 신청이 불가합니다.)

※ 본 확인서는 확인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·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.

상기 기업과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」 신청에 대한  
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( ) 은행 ( ) 지점 (전화 : )

상담자 : (부)점장 : (직인) ※ 직인날인 필수

## 참고2 | 취급은행 문의처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에 문의

□ 취급은행 연락처

은행명	대표전화번호	은행명	대표전화번호
경남은행	1600-8585	산업은행	1588-1500
광주은행	1600-4000	신한은행	1599-8000
국민은행	1588-9999	우리은행	1588-5000
기업은행	1588-2588	전북은행	1588-4477
농협은행	1588-2100	제주은행	1588-0079
iM뱅크(대구은행)	1588-5050	하나은행	1588-1111
부산은행	1588-6200		

## 참고3 | 보증 문의처

□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

지역	지점명	전화번호	지역	지점명	전화번호
서울	가사지점	02-818-4300	경기	경기광주지점	031-724-5200
	강남지점	02-2016-1300		김포지점	031-980-8600
	구로지점	02-6124-6400		부천시지점	032-620-8800
	서우지점	02-3215-5900		성남지점	031-750-4800
	서초지점	02-2224-3100		수원지점	031-8006-1500
	송파지점	02-3400-7900		시화지점	031-496-5911
	송로지점	02-2280-4800		안산지점	031-8084-5300
인천	성수지점	02-6900-0013		안양지점	031-450-1600
	부평지점	032-509-1700		오산지점	031-369-5500
인천	인천중앙지점	032-420-3500		용인지점	031-8020-4000
	인천지점	032-830-5600		의정부지점	031-820-0300
대전	대전지점	042-610-2200		일산지점	031-931-7200
	대전동지점	042-250-0700		판교지점	031-725-7800
세종	세종지점	044-850-1800		평택지점	031-659-8700
대구	대구지점	053-251-5600	화성지점	031-299-8200	
	대구북지점	053-350-9500	화성동지점	031-8047-4700	
	대구서지점	053-550-1400	강원	강릉지점	033-640-8700
광주	광주지점	062-360-4600		원주지점	033-730-8300
	광주서지점	062-970-9200		춘천지점	033-240-2800
울산	울산지점	052-220-7900	충북	지천시점	043-251-1500
	북산지점	051-970-0600		청주시점	043-290-9513
부산	동래지점	051-510-6900		충주시점	043-849-8600
	부산지점	051-606-6500	충남	아산지점	041-538-5900
	사상지점	051-320-3400		천안지점	041-629-5913
	사하지점	051-250-7808	경북	경산지점	053-859-9000
전북	익산지점	063-840-3100		구미지점	054-440-0730
	전주지점	063-270-9800		포항지점	054-271-4900
	군산영업소	063-460-2800		경남	김해지점
전남	목포지점	061-288-1500	마산지점		055-249-9799
	순천지점	061-729-9333	양산지점		055-370-4700
제주	제주영업소	064-727-0271	시주지점		055-750-1111
			창원지점		055-210-4099

※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(www.kibo.or.kr)에서 확인

□ 신용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

지역	지점명	전화번호	지역	지점명	전화번호	
서울	가산디지털	02-2109-4700	경기	경기광주	031-799-0200	
	강남	02-2141-3200		고양	031-909-6100	
	강남스타트업	02-2194-2900		군포	031-450-6400	
	강동	02-2041-9200		김포	031-980-4900	
	강북	02-3499-7200		남양주	031-560-6600	
	강서	02-3660-1400		반월	031-490-0450	
	광진	02-2204-6218		부천	032-650-6500	
	남대문	02-3709-7000		성남	031-725-5500	
	남동	032-810-5200		수원	031-230-1500	
	동대문	02-2250-5200		시화	031-488-3200	
	마포	02-710-4528		시흥	031-489-5900	
	마포청년스타트업	02-710-4640		안산	031-412-0500	
	방배	02-3489-5234		안양	031-389-9700	
	부평	032-500-2700		오산	031-371-6117	
	서울서부스타트업	02-2107-4213		용인	031-288-1800	
	송파	02-2140-8500		의정부	031-828-1700	
양재	02-3460-5400	이천	031-630-0114			
영등포	02-2165-5600	파주	031-956-3224			
인천	인천	032-880-3000	판교스타트업	031-724-3200		
	인천스타트업	032-451-4100	평택	031-650-0800		
	인천중앙	032-450-1600	포천	031-540-1500		
	청라	032-580-1400	하남	031-790-9600		
	충정로	02-311-4200	화성	031-350-9316		
테헤란로	02-3420-4200	화성서	031-8059-8516			
부산 경남	김해	055-320-2700	호남	전주	063-230-2500	
	사상	051-310-9600		광산	062-949-0100	
	창원	055-283-3551		광주	062-607-9100	
	동래	051-580-4200		광주첨단	062-520-2000	
	부산	051-605-1300		군산	063-460-1500	
	울산	052-226-7834		목포	061-280-9100	
	마산	055-240-8400		익산	063-830-3300	
	김해중앙	055-310-6400		순천	061-729-1300	
	녹산	051-974-6619		여수	061-640-2600	
	사하	051-200-9600		전주서	063-220-4800	
	양산	055-371-3100		정읍	063-530-2400	
	진주	055-760-7600		광주스타트업	062-600-1500	
	울산북	052-290-7920		대전중앙	042-539-5600	
	통영	055-640-6500		천안	041-550-8000	
	울산스타트업	052-228-8200		청주	043-261-9300	
	부산스타트업	051-660-5000		대전	042-250-2000	
대구 경북	대구서	053-350-8815	충청	서산	041-661-5225	
	구미	054-450-2500		아산	041-537-7224	
	성서	053-589-6500		충주	043-840-1500	
	대구	053-430-8800		당진	041-350-1600	
	수성	053-430-0505		보령	041-936-9165	
	포항	054-271-6400		제천	043-645-9004	
	경산	053-810-0900		진천	043-539-5400	
	칠곡	054-970-0899		세종	044-550-6724	
	경주	054-778-5700		대전스타트업	042-620-5300	
	달성	053-610-3500		강원	강릉	033-650-8023
	안동	054-840-8600			원주	033-749-1300
	영주	054-639-1500			동해	033-531-9006
대구스타트업	053-605-7600	속초	033-638-0659			
제주	064-740-9400	춘천	033-250-2500			
	서귀포	064-730-4300				